

2020년 5월 1일
출입국체류관리청

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인해 체류자격에 관한 활동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체류자격취소절차 상의 <정당한 이유>에 대해

입관법별표 제1의 체류자격(〈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〉, 〈기능〉, 〈유학〉 등)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관련한 활동을 계속하다 3개월 이상 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체류에 <정당한 이유>가 있다면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코로나19의 사태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감염확대나 감염방지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, 비록 3개월 이상 체류자격에 관련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<정당한 이유>에 속해,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- ① 고용된 근무처가 영업부진(혹은 영어자제) 상태에 놓여 일시적으로 휴업에 들어간 경우
- ② 직장을 사직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재취업활동을 하거나, 재취업 가능성이 있음에도 회사에 방문할 수 없게 된 경우
- ③ 재적중인 교육기관이 휴교 상태인 경우 (진학할 교육기관이 휴교인 경우도 해당)
- ④ 재정중이던 교육기관이 폐교해 다른 교육기관으로 입학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
- ⑤ 코로나19를 포함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장기화해 교육기관을 휴학한 경우